

#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훈(민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08. 23.

발의의원 : 김지훈(민), 박경원, 이상기,  
김상수, 이수련, 김지훈(국),  
김영실, 한송연, 이진환

## 1. 제안 이유

우리시 노후하수관로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막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노후하수관로 파손 등으로 인한 시민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경제적, 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하수관로 상태 점검 규정 개정 (안 제5조제1항)

나. 하수관로 상태 점검에 관한 방법 신설 (안 제5조제3항, 제4항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## 6. 관련 법령 : 덧붙임

##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하수관로 준설)”을“(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해 하수관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(지하수, 빗물 등)를 포함하여”로, “점검한다”를 “점검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[별표 2]

하수도 업종별 구분표(제15조제3항 관련)

업종	구분	내용
가정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</li> <li>·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</li> <li>·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</li> <li>· 공용 급수전</li> <li>·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</li> </ul>
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설소화전</li> <li>· 사립위탁시설(청소년회관, 체육시설에 한함)</li> <li>· 식품접객업</li> <li>· 공연장</li> <li>· 숙박업</li> <li>· 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</li> <li>·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포함)</li> <li>· 차량판매정비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제외),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 보관업 포함)</li> <li>· 음식점</li> <li>· 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</li> <li>· 사진현상소</li> <li>·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</li> <li>·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등 포함, 전당포 제외)</li> <li>· 발전소</li> <li>· 이발소(미장원 포함)</li> <li>·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</li> <li>· 화폐, 식목업</li> <li>·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(의료기관 제외), 오피스텔)</li> <li>· 도살장, 정육점</li> <li>· 양조업, 제빵업, 제분업(방아간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 제조업, 합성수지 제조업, 페인트류 제조업, 가구류 제조업(자재가공 포함), 연료제조(고압가스 제조업 포함)</li> <li>·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·가공업, 식품제조 가공업, 피혁제조 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</li> </ul>
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금업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</li> <li>· 제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</li> <li>·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 초차제품 포함)</li> <li>·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,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)</li> </ul>
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·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 요율 적용)</li> <li>·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</li> <li>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)</li> <li>·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</li> <li>· 정당</li> <li>· 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교회, 사찰,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</li> <li>· 병영</li> <li>· 신문사, 방송국</li> <li>·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</li> <li>· 급수탑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, 공설 소화전</li> <li>·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</li> <li>· 사회후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·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시설</li> <li>· 두께 재배업소</li> <li>· 기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</li> </ul>
대중탕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동탕에 대한 급수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· 특수 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li> <li>·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</li> <li>· 족욕탕업, 한증막업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)</li> <li>·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</li> </ul>
산업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li> </ul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하수관로 <u>준설</u>)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<u>점검한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하수관로 <u>점검 및 준설 등</u>)</p> <p>① ----- --- 위해 하수관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(지하수, 빗물 등)를 포함하여 --- <u>점검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④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</u>.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5조(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 등)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해 하수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를 포함하여 하수관로의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기 점검 및 조사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한 유지보수도 진행하고 있음(시비 편성)
- 조례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이며, 점검 또는 조사 이후 하수관로 개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장 김 춘

## □ 「하수도법」

제27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·관리자(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) 또는 국·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

2. 배수설비의 준설·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·관리 공사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·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